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30일(수)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9)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8)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6)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7)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7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9)	2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8)	2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0)	3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6)	3
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3
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3
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3
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7)	3
1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78)	3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5)	3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2)	3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3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3
1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3
1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3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2)	3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6시06분 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조금 있으세요. 잠깐만 있으세요.

-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9)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8)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6)
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7)
1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78)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5)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2)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1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1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2)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신장식 위원님, 두 분, 세 분……

안건, 법안 심사 결과 보고하고 하시겠어요, 지금 하시겠어요?

○신장식 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신장식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신장식 위원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 권한은 위원장님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법안 5건 의결하는데 관련 부처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무리 회의 운영 권한이 위원장님께 있지만 오늘 통과되는 법안에 대해서 정무위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이견이 없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위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하고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마지막 입장은 듣고 통과를 시킬지 안 시킬지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계류시켜서 소위로 돌려보

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회의가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형해화되는 것,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오늘 처리되는 법안 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에게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회의록에 정확하게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이 질의할 기회, 정부가 답변할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법안 의결 시에도 최소한—법안에 대한 쟁점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정부 측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융위원장에게 묻고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들이 제대로 회의록에 남겨지지 않게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정부 측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은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다음에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 사실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조차 좀 부끄럽습니다. MBK 청문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 지난 3월에 여야 모두가 현안질의를 통해서 MBK의 인수 과정 그리고 기업회생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해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33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무위 민생 상임위라고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만 명의 노동자와 입점업체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국민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위에서 지금 어떻게든 이 현안문제를 잘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떠약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여야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 당사자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청문회 날짜를 빨리 조속히 준비해 주시고 그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민병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 저 세 가지 정도 얘기할 텐데요.

첫째는 신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들이 안 나오면, 저는 법안2소위였는데 법안1소위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럴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다음부터는 전체회의 할 때도 기관장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MBK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 요구가 큽니다. 저도 오늘 떠약볕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 되면, 아니면 아니다라는 이유를 주셔야지 저희가 또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묵묵부답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시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는 남겨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

월 24일 날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우리 온라인 플랫폼 관련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8월 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답변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답변을 준다면 어떤 내용을 줄 건지에 대해서 본인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까? 저희하고 아무런 의견 없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짧게라도 제가 말씀을 드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EU의 디지털시장법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이 법안이 혁신 저해, 연구개발 위축, 경쟁 억제, 미국 기업 차별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소수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서 이들에게 자사 서비스 우선 배치, 번들링 등을 금지하면서 규제 대상으로 미국 기업에 집중하고 중국 기업은 실제로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미국 기업에 초점을 맞춘 규제 법안이라기보다는 한국의 대형 플랫폼에 대한 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법사위원회에서 8월 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입장인지, 답변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준다면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랑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지점을 명확히 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李憲昇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간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 측 출석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하면 시작할 때 대체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대체토론을 할 때 자기 소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면서 기관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하고, 우리가 소위에서 의결하고 오늘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하는데 이미 대체토론에서 진행이 됐고 소위에서 각 차관들이 와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 안 와도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원하시면 다음에 전체회의 할 때 다시 불러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MBK 청문회는 내가 간사님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여기 와서 청문회를 해도 답변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들었고 그래서 간사님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일정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병덕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오늘 법안 심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현안질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민병덕 위원** 그런데 8월 7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입장을 알려 주라고. 그래야지 저희 입장도……

○**위원장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안질의를 넣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준현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대안 3건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윤한홍 의원, 강민국·강준현 의원, 박상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현승 의원, 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총액 중 50%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거치지 않은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등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를 규율하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요건 및 운용 규제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국 의원, 김남근 의원, 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며, 허가 전자금융업자뿐 아니라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충전금이나 정산대상금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이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강민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민병덕·김성원·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정 의원, 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이나 기술유용 행위 등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1소위원회·2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안심사 제1 및 제 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점이 있습니다.

일단 BDC 도입의 장점이나 우려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상황, 21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는데 살펴봤고요. 금융위 담당국장에게 그간 진행된 심사 과정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소위 위원님들 비롯해서 많은 여야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적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안전장치와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당국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BDC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여전히 모호합니다. 벤처기업은 성장 가능성 보고 투자하는 건데요, 기술신용평가가 필수적인데 현재 회계법인 등 단순 신용평가기관이 기술신용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운용 주체에 대해서 여전히 증권사도 가능한 것처럼 법령상으로는 열어 뒀는데요. 담당국장은 23년 21대 국회에서 증권사는 일단 1차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하셨으면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듣고 회의록으로 남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 회사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와 채

권자 간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점 등이 여전히 시행령에서 풀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벤처업계 쪽에서 놓고 보면 일부의 주장처럼 과연 5년 폐쇄형 투자에 장기 투자 요인이 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장기투자 유인책이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공백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오늘 정부 입장 들어 보고 토론을 거쳐서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오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개선안이 마련되거나 시행령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1소위 위원장이시자 여당 간사이인 강준현 위원께서 책임을 지고 저의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강준현 간사님께 마이크 좀 드리세요.

○강준현 위원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BDC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평가기준이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운용주체와 관련해서도 1소위 때 증권사가 운용주체가 되면 투자자하고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 그거 확인했고요. 증권사를 제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해석상 문제가 없도록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 또한 시행령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다음, 이현승 위원님.

○李憲昇 위원 자본시장법을 제가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BDC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금융당국에 인가제를 도입하면서 증권사 고유계정하고 고객자산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권사는 일단 인가에서 우선 배제하도록 했고, 투자 방식도 지분 투자와 대출, 두 가지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현재 금융위원회하고 관련 업계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상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이니까 오늘 BDC 법안 의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금방 신장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여당 간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법안을 오늘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위원님은—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다음에 소위원회 열릴 때 참석하셔서 의견을 충분히 한번 개진해 주시면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심사보고된 법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에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
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강민국 강준현 김남근 김상훈 김승원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신장식 유동수 유영하 윤한홍 이강일 이양수 이인영 이정문 이현승
추경호 한창민 허영

○첨가 위원(1인)

박찬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최기도